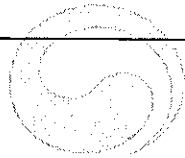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화 학 물 질 관 리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해당 화학물질(제품)이 유해화학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를 운영('06년~) 있음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율이 40%를 초과하고, 유통단계별로 화학물질(제품) 명칭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조사·보고를 통해 수집한 정보 간의 비교·검증, 누락·허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불법유통을 추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화관법상 안전관리체계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수입신고(지방청), 확인명세서 제출(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조사·보고가 중복되고, 개별 기관에 분산 관리되어 기업부담 가중 및 영업비밀 보호 취약하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하고, 신고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사용, 보관, 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 수입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성분·함량)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대신 작성·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그 밖에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연구실·학교시설, 소규모 세탁소 등)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부여, 「화학물질관리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중복 등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안 제9조 등)

- 1)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성분·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용도, 성상, 연간 제조·수입예정량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함
- 2) 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5년)을 하도록 함

나.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신고제 도입(안제9조의2)

- 1) 국외제조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선임하고 확인신고 등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허위 신고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등 정보제공 의무화(안제9조의3)

-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

호를 제공해야함

- 2)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라.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및 변경 근거 신설(안제23조제1항단서 및 제2항)

- 1)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극소량 취급시설 등에 대한 면제근거를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 제24조제6항, 법 제26조)

- 1) 「화학물질관리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정기·수시 검사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연1회)로, 일원화

바.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제48조제2항)

- 1)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확인신고내용의 관리, 화학물질 통계조사 의 시행,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시행,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국내 유통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게 화학물질의 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3. ~ 6. 12., 2018. 11. 28. ~ 2019. 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강화 6건(화학물질확인신고 및 대리인 선임 등, 화학물질확인번호 등 정보제공, 유해

화학물질 취급도급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등,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보고 및 검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화학물질확인)”을 “(화학물질확인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자”로, “그 내용”을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분·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용도, 성상, 연간 제조·수입예정량 등의 내용”으로, “제출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이하 “화학물질확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 화학물질확인신고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한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나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확인신고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여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

2. 제9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받아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선임 후 해임(사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는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화학물질확인번호의 제공) ①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는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에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동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화학물질을 양수하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누구든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및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8조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확인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조사”를 “통계조사계획”으로,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으로, “필요한 자료”를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정보”를 “정보(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번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시약을”을 “시약을 수입하려는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을 “받은”으로,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전에”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기본 정보와”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를 “결과 등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취급량이 적어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장외영향평가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시 사업장 주변지
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설
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
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성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
만, 직전의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서 이
미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 등이 검토되었던 물질로 다시 변경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하여”로,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장외영향평가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장외영향평가서는”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시범생산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2항 중 “업종별료”를 “사업장별료 제27조 각호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밖의”를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3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제35조제2항제6호 중 “아니”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0의2 .제4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계획
제42조의 제목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를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의 지역사회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을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

획서를 작성·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을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고지하고, 그 밖에”로,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고지하여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내용의 확인 및 관리
2.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시행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시행
4. 화학물질의 수출·입 실태 및 국내 판매·이동·보관·사용 등 정보의 체계적 파악·감시

제4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종합정보시스템”을 “종합정보시스템 및 제2항의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확인을”을 “화학물질확인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6의2.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3조의2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50조제1항제1호 중 “화학물질확인율”을 “화학물질확인신고율”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제5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

제5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
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신고율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
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제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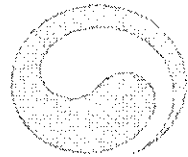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35조제2항제1호의2,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제50조제1항제1호·제1호의2, 제54조제5호, 제61조제1호·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항, 제28조, 제35조, 제49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제5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의 접수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에의 구축·관리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자가 확인명세서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임시로 발급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려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라 임시로 발급받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신 설>

<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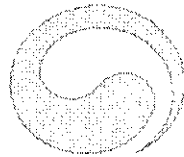
신고를 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이하 “화학물질확인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 화학물질확인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한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조·수입

<신 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하려는 화학물질이나 해당 화학 물질의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확인신고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를 선임하여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
여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
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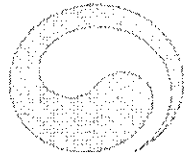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

2. 제9조의3에 따른 정보제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받아 화학물질을 수
입하는 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되었거나
선임 후 해임(사임한 경우를 포
합한다. 이하 같다) 자는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화학물질확인번호의 제
공) ①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한 자는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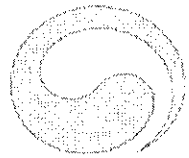
<신 설>

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에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
질확인번호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
다.

② 제1항 및 동조에 따라 화학
물질확인번호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
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가 아니더라도 화학물질을 양수
하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
질을 양도하는 자는 화학물질확
인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누구든지 화학
물질확인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및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
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운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 확인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
계조사계획-----

----- 실시할 수 있다.

③ -----
-----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생략)

---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필요한 자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

1. -----

- 정보(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삭 제>

② 제1항-----

- 시약을 수입하려는 자가 ---

③ ----- 받은 -

----- 받아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

-----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의 기본 정보와 -----
----- 결과 등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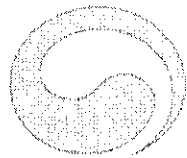
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농도, 성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직전의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서 이미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 등이 검토되었던 물질로 다시 변경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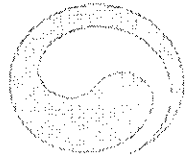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 ⑤ (생략)

<신 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⑥ (생략)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시범생산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⑦ (생략)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생략)

<신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장별로 제27조
각호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 26. (생략)

③ (생략)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6. ----- 안
-----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7. ~ 2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

----- 자(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 계획

10의2. 제42조제1항 각 호를

11. (생략)

② ~ ⑦ (생략)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포함하는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계획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의 지역사회 고지) ① 제41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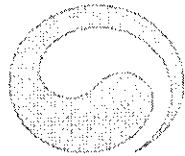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 ----- 사고대비물질-----

2. 3.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화

③ ~ ⑤ (생략)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
 <신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
 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
 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고지하고, 그 밖에 -- 방법으
 로 고지하여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
 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신고내용의 확인 및 관리

2.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시행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시
 행

4. 화학물질의 수출·입 실태
 및 국내 판매·이동·보관·
 사용 등 정보의 체계적 파악
 ·감시

③ -- 제1항 및 제2항-----

<신 설>

<신 설>

7. ~ 11. (생 략)

② (생 략)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신 설>

2. ~ 7. (생 략)

② (생 략)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6의2.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3조의2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

7.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

1. ----- 화학물질확인신고를 --

1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된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③ (생략)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4. (생략)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6. 7. (생략)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 13.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1. 2. (현행과 같음)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수수료)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

9. ~ 13.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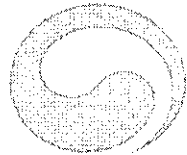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신설>

1. (생략)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 6. (생략)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 12.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

-----.

1.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1의2.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 11. (생략)

②·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된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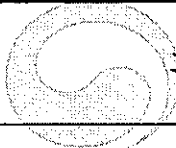
-----.

1.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안전과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연 락 처	044-201-6840